

공고

간 기 안 용 지

문서번호	432.4	(전화번호 465)	신결규정 조 호
분서번호	219		전결사항

처리기한	기 안 자	결	재	자
시행일자	구 회 정 리 고	도시 계 획 국 장	<i>[Handwritten Signature]</i>	
보존년한	김 동 참	기 안 일 자	결	재 일 자
		68 7 14		3 1 A

보 구 회 정 리 고 장

조 관 지 계 장

기 관

공고 제 215 호

합 조 계 획 국 장

법 제 담당 관

법 부 관

총 무 처 장

경 수 관 유 실 소

각 안 참 조

문 지 예 정 지 일 부 번 경 지 정 공 고

내 부 결 제

4월 1일

4.13

제 1 안 내부결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5호 (67. 12. 26)로서 지정함바 있는 창동 도시구회정리 사업지구 관지 예정지 지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지를 변경 지정 하고자 합니다.

2. 변경사유

가. 성북구 수유동 155- 1C (3평) 등 156의 6 (1평)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인접 토지의 합병 관지를 지정 하였든바 토지 소유자 (박 성 보), 출원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 토지의 합병하여 관지를 변경 지정하고자하며,

나. 수유동 605의 21 (192 평) 및 상문동 391의 82 (5평) 동 391-83 (-1평) 동 391의 84 (11평)은 착오로본지 대상에서 누락됨이 발견되어 추가 지정코져 하며,

다. 수유동 100 의 1 (36평) 토지소유자로부터 편지위치 시정 요청이 있어 조사 검토하고 종전 토지위치를 감안하여 편지 변경 (병태 조정) 지정코져 합니다.

제 2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71호
~~편지 예정지 변경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장동 오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 중 ~~과제~~ ^{한양대학교} 도서의 ~~간이 변경 지정~~ 합니다.
2. ~~편지~~ ^{완성}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서울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 ^{동부구립중앙도서관} 합니다. ~~13~~

1968. 3. 1968. 4.

서울특별시 장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
제목 편지 예정지 변경 통보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5호 (67. 12. 26)로 지정함바 있는 장동 오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중 구아의 토지에 대하여 별첨 변경지정서로 감이 변경 지정 하였음을 통보 합니다.

2. 편지 예정지 변경에 대한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 구청 민원 봉사실에 비치 하였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편지 예정지 변경 조서 1부.

수신처. 별첨 목록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 장

제목 원지 예정지 변경 통보

창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원지 예정지 지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과 같이 변경 지정 되었으니 업무 수행에 착오 없도록 할것.

-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 2. 원지 예정지 변경 조서 1부.
- 3. 원지 예정지 변경 도면 1부.

수신처. 성북구청장. 동부토지구획정리 사업소장

제 5 안

수신 공보심장

발신 고 장

제목 원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창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원지예정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원지 예정지를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변경 지정 하였으니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제 6 안

수신 적 부 고 장

발신 고 장

제목. 관지 예정지 일부 변경 조서 송부

창동 보지구곡성리 지구 관지 예정지중 일부 호지에대하여 법첩
조서외 감의 변경 지정 하엿기 송부 합니다.

첨부. 관지 예정지 일부 변경 조서 부. 끝.

소유자 목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158	박성보
	" 삼선동 1가 20-50	송노국
	" 수유동 153-55	유덕식
	" 삼선동 206	김보조
	서북문구 덕현동 40-25	김정현
	성북구 갑동 414-18	김홍진
	" 쌍문동 312-11	이병상
	중포구 송포2가 10-20	임동익
	성북구 수유동 151	홍덕주, 박양호
	" 안암동 1가 141	김복진

보 고 서

소 직

서울도시계획사업 창동 토지구획처리 지구내 일부 혼지예장지를 지정
한바 수유동 155-10, 동 158-6, 동 100-1, 동 605-21 및 쌍문동
391-82, 동 391-83, 동 391-8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수유동 155-10(3필) 동 158-6(1필)은 소유권은 삼익하나 수
유동 155-55 및 1필 동 155-1의 전상대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한필
혼지를 지정 하였든바 소유자 (박 성 포)로부터 동일 소유지의 합병 관
지 신청보칙이 있어 지정보적 하며,

2. 수유동 605-21(2,2필) 및 쌍문동 391-82, 동 391-83,
동 391-84는 혼지예장의 지정 당시 착오로 누락 되어 추가 지정코적 하며

3. 수유동 100-1은 근소한 편적임으로 부담 편적을 고려하여 지정
하였든바 소유자로부터 근소한 편적 지적이 되므로 병태 조정 요청이 있
어 지정보적 합니다.

1955. 3. 22.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술보 김 동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

환지예정지 변경조서

변경지

종 전 토 지				환 지 예 정 지				비 고
동명	지 번	지 목	면 적	번 호	변 경 전 권리면적	변 경 후 권리면적	환 지 면적	
수위	154	밭	6-					
"	156	"	409-	34				
"	157	"	111-		1,400.00			
"	158	밭	725-					
"	158	"	447-	(4)				
"	155	"	9-	7		1,100.00		
	합		(261)		1,400.00	1,500.00		
수위	155	밭	2-					
"	158	밭	2-	7	20.00	12.00		
"	157	"	1-					
	합		24-		20.00	16.00		
수위	155	밭	24					
"	155	"	3		67-	6.50		
4	155	"	3					
	합		77		67-	6.50		

358

15-1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전 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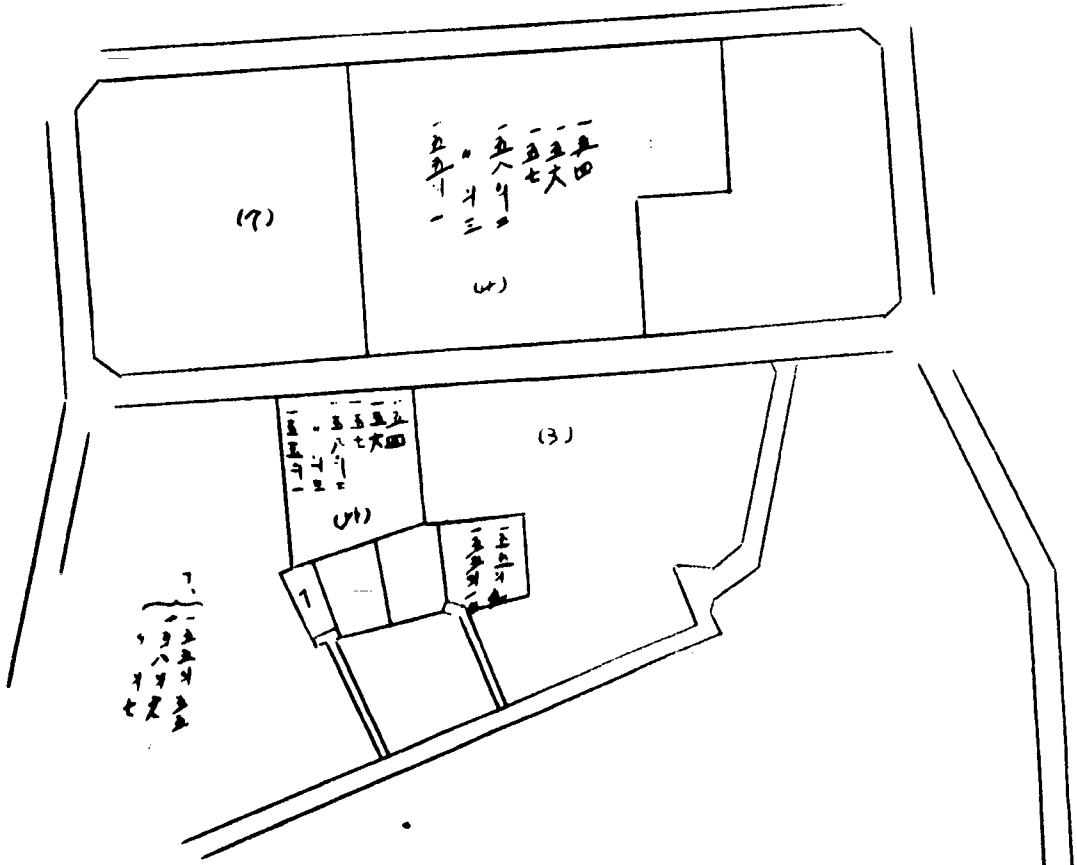
종 전 토 지				환 지 예 정 지				비 고
동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 호	변 경 전 권리면적	변 경 후 권리면적	변 호	
수	154	산	69					
4	156	4	409	4		249.20	3	249.20
3	157	4	111					1444
1	158	2	720		1440.00			
4	159	4	447	4		1190.60	4	1190.60
6	155	산	9					
4	155	4	10					
4	158	산	6					24
								3.60
	합		1845		1440.00	1440.00	1444	1440.00
49	155	산	21					24
4	158	산	2				3	20.16
	합		22					16.20
49	155	산	24				3	64.40
	합							69.50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종 권 도 지				환 지 예 정 지						비 고
품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변 호	변 경 전		변 호	변 경 후		
					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상분	3P1-79	채	20-	61	1920	3400	61	20.50	3400	
	3P1-83	"	11							
	합		31		1920	3400		20.50	3400	정수
상분	3P1-62	채	59-	61	4450	6290	11	4630	6290	
	3P1-84	"	11							
	합		64		4450	6290		4630	6290	정수
상분	3P1-60	채	31	59	2050	3960	59	2420	3960	정수 14.80
	3P1-82	"	5							
	합		36-		2050	3960			3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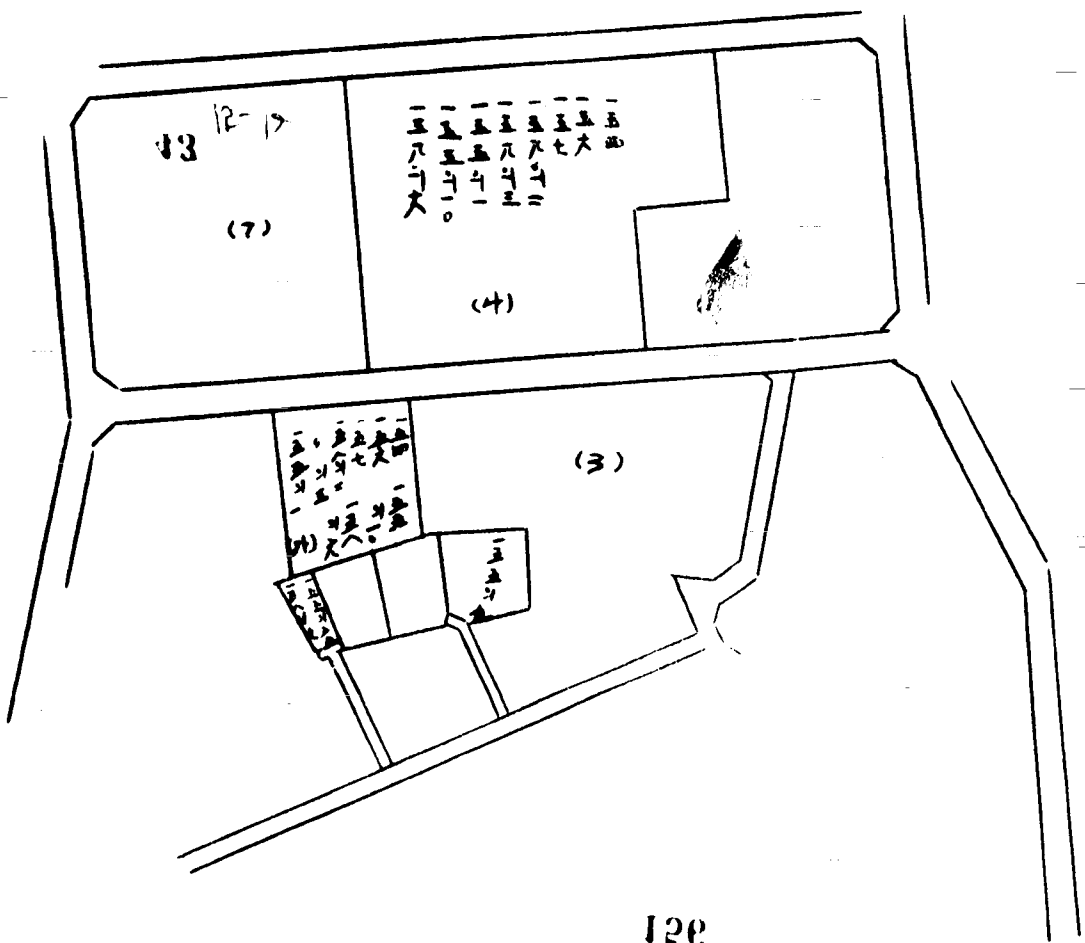
$$S = \frac{1}{1200}$$

변경 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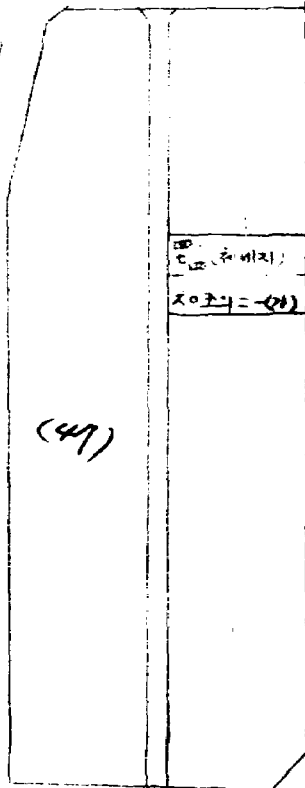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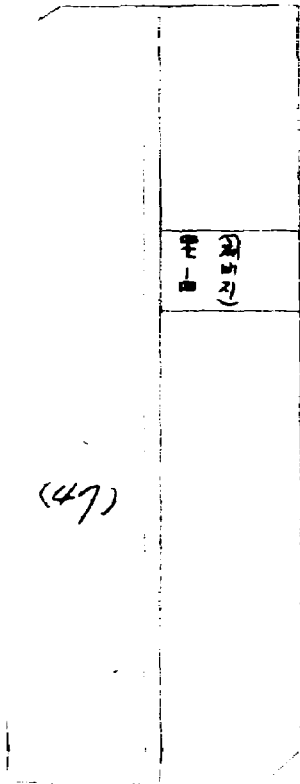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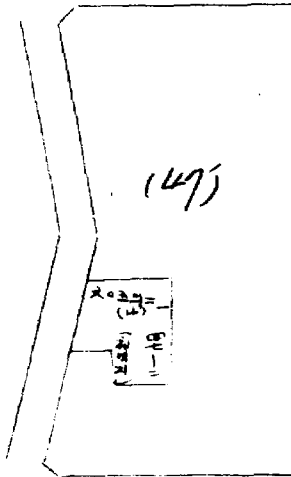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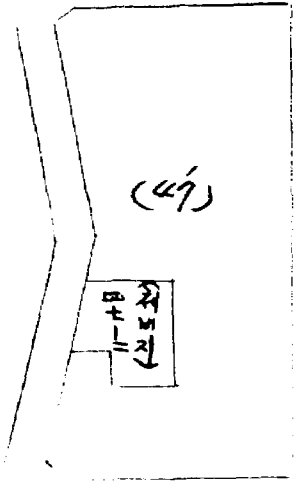
변경 후



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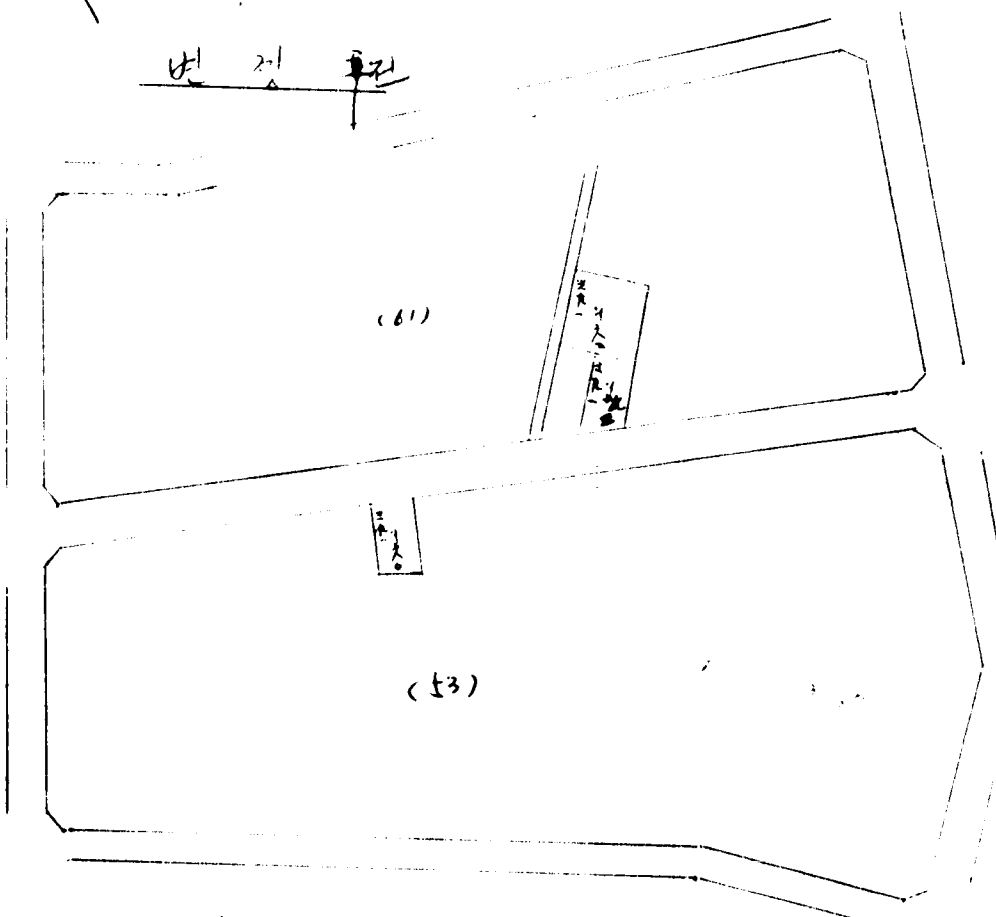
~~1200~~

변경부



1200

변경권



변경후

